

# 기안용지



제1안

분류기호	법무 181-	(전화번호 307 )	전 결 규 정 조 환
문서번호	1227		전 결 사 환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77. 11. 22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 서장	11/19	협조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법제개정	
기안책임자		김경중	

결속	과 안 함 조	발신	통제	
----	---------	----	----	--

**제 목** 서울특별시세과징기과과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중개정

**제1안** 내부 결재 **주무과발행**

서울특별시세과징기과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일부  
를 법침과 같이 개정하여 세수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세입금징수실적평가  
에 석정을 기하고 자 합니다.

- 첨부** 1. 문령 발령문 1부.
2. 세정 1234-619 (77.11.12) 1부. 풀.

**제2안**

**수신** 문과공보관

**제목** 시보 기재

법침서울특별시 세입금과징기과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관한규정  
을 시보에 기재발령함것.

**첨부** 서울특별시문령 제 호 1부. 풀.

**제3안**

**수신** 세정과장

1372

제목 혼령방명

서울특별시 세입금 회징기관과 공무원의 십적관직의 공기에 관한규정을  
법집과같이 시보에 기재 남당하였으니 착오 없도록함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제 오 1부. 끝.

국  
장

1977.11.22  
시장

서울특별시 생 공장기관과 공무원의십적관리 규정  
및 평가에 관한규정중 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7 년 11 월 22 일

서울특별시장 구 라



서울특별시 시세과장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과장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제목중 "시세과장기관"을"세입금 과장기관"으로 한다.

제 1조 본문중 "시세부장기관"을 "세입금과장기관"으로 한다.

제 2조 제 1항중 제 3호 내지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남역대 성역 실적
- 4. 추정역대 징수 실적

제 2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항을 삭제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기관별, 회계별로 당해기관의 세입징수 실적의 매월 15일 까지 전월분 및 선월까지의 실적누계를 총합하여 시장 (참조 세정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제 1항 본문중 "시세"를 "세입금"으로, 제 2호 "시세과장월보"를 "세입금 납기내 및 납기후 과장 월보"로 하고 제 3호 및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남역징수 실적보고서
- 4. 추정역 징수 실적보고서

제 3조 제 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호 내지 제 3호를 삭제한다.

(2) 과장원의 근무실적은 기관별 소속 계장이 평가하고 소속과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 4조 제 1항중 제 1호 내지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입통표대 징수 실적 40%
- 2. 부과액대 징수실적 40%
- 3. 체납액대 징수실적 10%
- 4. 추징액대 징수실적 10%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조 (상벌등) (1) 세입금 징수 유공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 2회 이상 상급을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2) 시정회 세외수입금 과징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또는 특별승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무국장은 세입금 과징실적이 극히 불량한 기관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또는 인사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무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차출 근무 개사거나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할 수 없다. 다만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마 시행한다.



議案  
第  
一  
〇  
〇  
號

# 修特別市警察局長任專決規程 中改正規程

修特別市行政機構訓令規程改正

1. 大統領令 第7766号 (75. 8. 22)  
防衛課 訓令 作战課 新設  
事務先考 一部改正.
2. 大統領令 第8080号 (76. 4. 15)  
情報課 情報 1. 2 課 至 所 裁  
新設 訓令 以外 事務先考 改正